

[별표 2] <개정 2016. 6. 28.>

복합허가사항(제32조 관련)

주된 허가사항	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
1.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·보수	가.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.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(담은 제외한다)의 점용 다.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(담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)의 신축·개축·변경 라.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.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·모래·자갈의 채취
2.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(담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)의 점용	가.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.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
3.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(담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)의 신축·개축·변경	가.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.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(담은 제외한다)의 점용 다.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라.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·모래·자갈의 채취 마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
4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(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)의 사용	가.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.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(담은 제외한다)의 점용 다.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(담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)의 신축·개축·변경 라.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
5. 법 제33조제1항	가.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

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	나.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다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
6.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·모래·자갈의 채취	가.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.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(담은 제외한 다)의 점용 다.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(담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)의 신축·개축·변경 라.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
7.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	가.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.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
8.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제1항제4호에 따른 스케이트장, 유선장·도선장 및 계류장(유선장·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	가.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.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(스케이트장, 유선장·도선장 및 계류장에만 해당한다)의 신축·개축 또는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 다.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
9.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선박의 운항	가.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(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의 신축·개축 또는 변경 나.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(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

※ 비고

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한다.